

2015년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

□ 적정실내온도 준수

- (냉방온도 제한)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℃이상으로 실내온도 유지
 - 냉방설비용량의 60% 이상이 비전기식 냉방방식(GHP, 흡수식 냉동기, 축냉식, 지역냉방, 지열 등)인 경우 냉방온도를 평균 26℃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
- (냉방온도 제한 예외) 다음의 시설의 경우, 자체 에너지절약추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 실내온도를 설정하여 운영 가능
 - ① 학교, 도서관, 교정시설, 교육시설, 콜센터,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(단, 사무공간은 제외)
 - ② 의료기관, 아동 관련 시설(어린이집 등),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
 - ③ 미술품 전시실, 전산실, 식품관리시설(구역)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
 - ④ 공항, 철도·지하철 역사,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
 - ⑤ 수련원,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
 - ⑥ 시·군·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
 - ⑦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

※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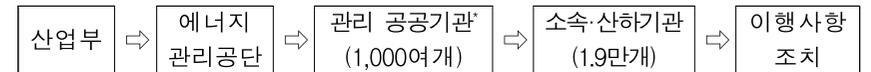
- 가. 중앙집중식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 노후화, 냉방 불균일 등 기관별 특성이 있는 기관(단, 적정 실내온도는 26℃이상으로 설정 가능)
 - * <기관별 특성 사례 > 전체 실내평균 온도는 28℃이나 저층부는 26~28℃이고 고층부는 30℃이상일 경우 평균 온도를 조정하여 고층부 온도를 낮출 수 있음
- 나.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공간. 단, 층별(혹은 공간별) 냉방온도 조정이 불가능한 건축물이고 민간이 50%이상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평균 냉방온도 26℃ 이상으로 적용
- 다. 계약전력 10%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(ESS)를 설치한 건축물
- 라. 각 기관에서 건물내 냉방온도 조절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을 무더위 휴식 장소('무더위 쉼터')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

□ 조명 및 전기기기 사용 합리화

- (조명 사용 합리화) 창측 조명 소등 및 복도 조명 50% 이상 소등 권장
 - * 사무실 조명은 전력수급비상 주의단계에서 50% 이상 소등, 경계단계에서 완전소등(절전통보시스템에서 단계별 통보 예정)
- (피크시간대 전기사용 자제) 14~17시에는 불요불급한 전기 사용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전기기기는 피크시간을 최대한 피해 사용

□ 전력수급 위기단계별 조치 사항 이행

- 기 구축된 절전통보시스템(에너지관리공단 운영)을 통해 메시지가 통보되면 즉시 산하·소속 기관에 전달하고 이행사항 조치



- * 관리 공공기관 : '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'(산업부 고시) 제21조제1항의 관리 감독기관(1,000여개)
- * 제외기관 및 시설 : 공항, 군사시설, 대중교통시설, 데이터센터, 사회복지시설, 의료기관, 전기·가스·열에너지공급시설, 초·중·고등학교, 터널, 항만 하역시설, 기타 국민의 생명·안전유지 관련기관,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

○ 단계별 조치 사항

경보 수준	조치 사항
준비단계 (예비력 500만kW 미만)	· 냉방온도 28℃이상으로 조정 (단, '냉방온도 제한 예외' ①~⑥에 해당되는 시설은 제외)
관심단계 (예비력 400만kW 미만)	· 불요불급한 전기사용 중지 · 냉방기, 조명, 승강기 사용 자제
주의단계 (예비력 300만kW 미만)	· 냉방기 사용 중지, 사무실 조명 50%이상 소등 · 업무와 무관한 전기기기(냉온수기 등) 전원 차단 및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 플러그 뽑아 대기전력 차단
경계단계 (예비력 200만kW 미만)	· 필수기기를 제외한 모든 사무기기 전원 차단 · 실내 조명 완전 소등, 승강기 사용 중지
심각단계 (예비력 100만kW 미만)	· 정전 대비

- * 실시간 전력수급 현황, 전력수급 비상 단계 등은 에너지절약 홈페이지(www.powersave.or.kr)나 스마트폰 '에너지절전' 앱을 참고

□ **자율복장 착용 권장**

- 양복 등의 정형화된 근무복 보다 **간소하고 단정한 복장** 착용 권장

□ **국민 불편 배려**

- **학교, 도서관, 대중교통시설, 문화·체육시설** 등 다수의 학생,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과 폭염 취약층을 위한 **무더위 쉼터**는 자체적으로 적정 냉방온도를 정하여 운영
- 지하철 에스컬레이터,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

□ **기타**

- **냉방온도제한 예외기관**이라 하더라도 긴팔 옷 입고 냉방, 문열고 냉방 등 **과냉방**하거나 **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례는 지양**
- 산하·소속 기관에 대한 **실내온도 준수 여부, 절전통보시스템 전달 체계**와 이에 따른 **이행조치사항 준비 등 자체 점검**
- 기관별 특성에 맞는 **에너지절약 대책**을 수립하여 추진